

# 한국철도협회 정관

2017. 07. 18. 제정

2019. 03. 21. 개정

2022. 03. 30.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협회는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하여 한국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Railway Association (약칭 KORASS) 이라고 표시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 설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1. 철도분야 정책, 안전 및 기술 개발의 지원 (개정 2019.03.21)
2.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3. 철도분야 국내외 교류·협력의 지원
4. 철도산업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5. 철도분야 전문인력의 교육, 양성 및 관리 (개정 2022.03.30)
6. 철도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7. 철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철도분야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9. 철도와 관련된 부대수익사업은 별지로 정함
10.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①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정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1. 단체회원은 협회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거나 철도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인, 기관, 단체 등으로 한다.
2. 개인회원은 철도관련 단체의 종사자와 협회목적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철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협회와 철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2.03.30)

제7조(회원의 가입) ①협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가진다.

②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개정 2022.03.30)

제8조(회비 및 기금) ①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며 부과방법 및 금액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써 가입비 및 연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에게 모금 및 부과 징수하는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회비를 말한다.

-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협회의 회원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각종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②정회원은 협회운영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③특별회원은 총회에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 ④단체회원인 경우 그 대표자가 권리를 가지며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협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규정된 의무와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⑥회원의 지위를 갖는 대표자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후임자가 자동적으로 그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다.
- ⑦정회원은 회비납부 및 정관, 제 규정에서 정한 각종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 제10조(회원의 상벌)** ①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및 해산
3. 제명

**제12조(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제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연회비 체납이 2년 이상일 때

제14조(권리상실)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회원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협회의 자산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 제 3 장 임 원

제15조(임원)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20인 이내의 부회장, 50인 이내의 이사(회장 및 부회장 포함), 감사 2인을 두며, 회장 및 부회장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회장, 이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다만, 상임부회장의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이후에 최초 개최되는 정기총회까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선임된 상임부회장은 총회의 추인을 받기 전이라도 이사로 보며, 총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과 상임부회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당연직 이사 및 부회장이 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회장 및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총회, 상임부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회장, 상임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한다. 이 경우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경우 비상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상임 임원의 경우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임기를 새로 기산한다.  
④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회장 및 이사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분장하고 회장 및 상임부회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임원의 급여) ①상임 임원에게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의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한다.

②비상임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협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은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고문은 협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협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4 장 회 의

**제22조(회의의 종류 및 구성)** ①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총회 및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의 개최)** ①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총회의 소집)** ①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일정과 의안을 총회를 개최하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의 결정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본재산 또는 기본금의 설치와 처리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의 신설·변경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26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방법)** ①총회는 정회원의 의결권 1/4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의 서면결의로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총회의 의결권)**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는 의결권에 의한다.

**제28조(이사회 개회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②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③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의사일정과 의안을 이사회 개회 7일 전까지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규정 등 협회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사업계획 및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4.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6.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7. 철도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총회의 의결에 속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하여 최종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이사회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장은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제31조(회의록)**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2인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정회원 및 이사회 재적인원수
3. 회의에 참석한 정회원 및 이사의 성명(서면 표결자 및 표결 위임자 포함)

- 4. 의결사항
- 5. 회의진행 결과

## 제 5 장 위 원 회

제32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회장은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술위원회, 정책위원회, 산업위원회, 해외협력위원회, 남북철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2(해외사업의 통보 등) ①해외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은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협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3(해외협력사업 분담금) ①해외사업 통보를 한 회원사는 매년 해외협력사업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담금의 액수는 별도로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다.  
②분담금 납부를 해태한 회원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제 6 장 조 직 구 성

제33조(기구) ①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수출지원센터 및 인재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03.21.) (개정 2022.03.30)  
②회장은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별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33조 2(과건) ①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원사에게 소속 직원의 과건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과건된 직원의 복무 및 직무 등에 관하여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직원의 구성 및 직무) ①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 직제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수출지원센터에는 수출지원센터장과 직원을 두며, 직제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3.21.)

③ 인재개발센터에는 인재개발센터장과 직원을 두며, 직제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2.03.30)

④사업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직원의 구성 및 직제와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03.21)

제35조(직원의 임면) 사무국, 수출지원센터 및 인재개발센터는 와 사업별 전담부서의 직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03.21.) (개정 2022.03.30)

제36조(직원 급여) 직원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37조(재원) 협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기부금, 기관 및 단체의 운영지원비
2. 학술연구 조사 용역 수입 및 사업 수익금
3. 정부의 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4. 자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
5. 기타 부대사업 수입

제37조 2(기부금 운영) ①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②홈페이지 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자산의 종류) 협회의 자산은 동산, 부동산, 지적소유권, 특허권 및 채권으로 한다.

제39조(사업연도)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회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정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협회를 해산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의결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협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운영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규정) 협회에 관하여 이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등기 이사) 정관 제15조의 임원중에서 등기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협회가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민법 제 32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철도협회의 동일성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법인의 형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한국철도협회로 조직변경하고, 이에 따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사업실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임원의 임기, 운영위원, 직원고용에 관하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 제14547호) 제1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본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9.03.2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22.03.30)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 (제4조 제9호)

## 철도와 관련된 부대수익사업 목록

구 분	업무명칭
업무별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출판업</li><li>2. 보험업무 대리업</li><li>3. 물품공동구매</li><li>4. 여행(대리)업</li><li>5. 광고·주차장·부동산 등 임대업</li><li>6. 상조회</li><li>7. 컨설팅</li><li>8. 용역</li><li>9. 유통사업</li><li>10. 기타 수익사업</li></ol>